

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3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06. 28. 김향숙 의원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7. 0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7. 12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고성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,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나. 군수의 책무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다.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라.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마. 야외운동기구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률 시행령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24호
- 예고기간: 2023. 6. 28.(수) ~ 2023. 7. 3.(월) 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가. 개정 취지(필요성)

-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용어의 정의,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 -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야외운동기구’, ‘이용자’, ‘총괄부서’, ‘관리부서’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군수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조례 적용함.
-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-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설치한 부서로 함.
-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 - 접근성과 편의성, 안정성을 고려한 다수 주민 거주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
 - 시설물 미설치 지역 우선 설치, 이미 설치 장소에 신규 설치 지양, 안전 기준에 적합한 운동기구 설치,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등 설치기준 규정
 -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착 의무화
-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 -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
 - 긴급 또는 정밀 점검을 할 수 있고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
 - 설치·보수·철거 시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총괄 관리함.
- 야외운동기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 -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신청 규정
-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다. 종합의견

- 그동안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고성군 전역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만큼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, 안전사고 사후 조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7. 12. 원안 가결함.